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청정 맑음!
서울교육 밝음!

2026년 학교법인 성보학원 및 성보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관-20883, 2025. 12. 31.)
- 2026년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추진계획(감사관-1535, 2026. 1. 30.)
- 2026년 상반기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실시 통보(감사관-2214, 2026. 2. 11.)
-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 점검,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대안 제시로 학교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감사 대상기관: 학교법인 성보학원 및 성보고등학교
- 감사범위: 2023. 3. 1. ~ 2026. 감사일 현재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 학교법인회계 운영 및 학교회계(예·결산 및 세출)
-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학사(성적관리, 생활교육, 학교생활기록부)
- 교직원 인사관리(채용 전형,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계약(물품, 용역, 공사) 및 물품·재산관리
- 세입(전입금, 수익자부담수입 등), 세입·세출외현금
- 교직원 복무 관리
- 급여(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 감사처분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6. 5. 7.(목) ~ 5. 8.(금) [2일간]
- 감사인원: 감사단장 외 6명

5. 처분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참고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 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학교법인 사무직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학교법인 성보학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학교법인 성보학원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고, 소속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에 의하면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기타 근로조건들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설정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 또는 부담금을 적정하게 적립·납입하는 등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학교법인 성보학원은 아래 [표]와 같이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임용 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하지 않고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 또는 부담금을 적립·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학교법인 소속 사무직원 현황

연번	성명	직급	담당업무	임용일자	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급여 적립 여부
1	★★★	○○	법인회계	○○.○○.○○	X	X
2	▲▲▲	○○	수익사업회계	○○.○○.○○	X	X
3	♣♣♣	○○	운전기사	○○.○○.○○	X	X

※ 자료: 학교법인 성보학원 제출자료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성보학원 이사장은

앞으로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운영하여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 또는 부담금을 적정하게 적립·납입하는 등 사무직원 인사 및 근로조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일련 번호
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 주 의 요 구

제 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성보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성보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속 학생들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¹⁾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매년 발행)에 따르면,

1)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 제5호에서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매년 발행)에 따르면, 교과담당교사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성보고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입력하지 않고, [표]와 같이 교사 ○○○이 ‘체육’ (2학년 2

학기 187명) 및 ‘운동과 건강’ (3학년 1학기 60명)을 수강한 학생 247명을 대상으로, 교사 ▲▲▲이 ‘화법과 작문’ (3학년 1, 2학기 68명), ‘고전읽기’ (3학년 1학기 18명) 및 ‘철학’ (3학년 2학기 32명)을 수강한 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일괄 기재하는 등, 교사 18명이 학생 총 851명에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 2025학년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복 기재 내역

담당	과목명	학년/학기	기재 대상	기재 내용
교사 ○○○	체육	2학년 2학기	♣♣♣ 등 27명	[별표] 참조
			♣♣♣ 등 26명	[별표] 참조
			♣♣♣ 등 26명	[별표] 참조
			♣♣♣ 등 25명	[별표] 참조
			♣♣♣ 등 25명	[별표] 참조
			♣♣♣ 등 22명	[별표] 참조
			♣♣♣ 등 21명	[별표] 참조
			♣♣♣ 등 15명	[별표] 참조
	운동과 건강	3학년 1학기	★★★ 등 16명	[별표] 참조
			★★★ 등 12명	[별표] 참조
★★★ 등 11명			[별표] 참조	
★★★ 등 11명			[별표] 참조	
★★★ 등 10명			[별표] 참조	
소계		247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3종을 학생 10명~27명에게 중복 기재 ※ 체육: 2학년 수강 학생 198명 중 총 187명(94%) ※ 운동과 건강: 3학년 수강 학생 227명 중 총 60명(26%)	
교사 ○○○	화법과 작문	3학년 2학기	○○○ 등 48명	[별표] 참조
		3학년 1학기	○○○ 등 14명	[별표] 참조
		3학년 1학기	○○○ 등 6명	[별표] 참조
	고전읽기	3학년 1학기	○○○ 등 18명	
	철학	3학년 2학기	○○○ 등 32명	[별표] 참조
소계		118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종을 학생 14명~48명에게 중복 기재 ※ 화법과 작문: 3학년 수강 학생 242명(121명×1, 2학기) 중 총 68명(28%) ※ 고전읽기: 3학년 수강 학생 227명 중 총 18명(8%) ※ 철학: 3학년 수강 학생 227명 중 총 32명(14%)	

담당	과목명	학년/학기	기재 대상	기재 내용
교사 ○○○	생활과 윤리	3학년 1학기	○○○ 등 15명	[별표] 참조
			○○○ 등 15명	[별표] 참조
			○○○ 등 15명	[별표] 참조
			○○○ 등 15명	[별표] 참조
			○○○ 등 14명	[별표] 참조
소계		74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종을 학생 14명~15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118명 중 총 74명(63%)	
교사 ○○○	정치와 법	3학년 1학기	★★★ 등 31명	[별표] 참조
			★★★ 등 20명	[별표] 참조
	통합사회2	1학년 2학기	★★★ 등 14명	[별표] 참조
소계		65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종을 학생 14명~31명에게 중복 기재 ※ 정치와 법: 3학년 수강 학생 67명 중 총 51명(76%) ※ 통합사회2: 1학년 수강 학생 164명 중 총 14명(9%)	
교사 ○○○	음악 감상과 비평	3학년 1학기	♣♣♣ 등 14명	[별표] 참조
			♣♣♣ 등 13명	[별표] 참조
			♣♣♣ 등 13명	[별표] 참조
			♣♣♣ 등 11명	[별표] 참조
소계		51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종을 학생 11명~14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133명 중 총 51명(38%)	
교사 ○○○	사회문화	3학년 1학기	◇◇◇ 등 27명	[별표] 참조
	통합사회2	1학년 2학기	◇◇◇ 등 10명	[별표] 참조
소계		37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종을 학생 10명~27명에게 중복 기재 ※ 사회문화: 3학년 수강 학생 131명 중 총 27명(21%) ※ 통합사회2: 1학년 수강 학생 164명 중 총 10명(6%)	
교사 ○○○	철학	3학년 1학기	◇◇◇ 등 19명	[별표] 참조
		3학년 1학기	◇◇◇ 등 14명	[별표] 참조
소계		33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종을 학생 14명~19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227명 중 총 33명(15%)	
교사 ○○○	생명과학Ⅱ	3학년 1학기	▼▼▼ 등 29명	[별표] 참조
소계		29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29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51명 중 총 29명(57%)	
교사 ○○○	영어권 문화	3학년 2학기	▼▼▼ 등 29명	[별표] 참조
소계		29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29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227명 중 총 29명(13%)	
교사 ○○○	지구과학Ⅰ	2학년 2학기	♠♠♠ 등 27명	[별표] 참조
소계		27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27명에게 중복 기재 ※ 2학년 수강 학생 89명 중 총 27명(30%)	
교사 ○○○	영어 독해와 작문	3학년 1학기	♠♠♠ 등 25명	[별표] 참조
소계		25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25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227명 중 총 25명(11%)	
교사 ○○○	공통국어2	1학년 2학기	▲▲▲ 등 12명	[별표] 참조
	독서	2학년 2학기	▲▲▲ 등 11명	[별표] 참조

담당	과목명	학년/학기	기재 대상	기재 내용
소계		23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종을 학생 11명~12명에게 중복 기재 ※ 공통국어2: 1학년 수강 학생 164명 중 총 12명(7%) ※ 독서: 2학년 수강 학생 198명 중 총 11명(6%)	
교사 ○○○	미적분	3학년 1학기	㉡㉡㉡ 등 21명	[별표] 참조
소계		21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21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125명 중 총 21명(17%)	
교사 ○○○	지구과학II	3학년 1학기	㉡㉡㉡ 등 17명	[별표] 참조
소계		17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17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53명 중 총 17명(32%)	
교사 ○○○	여행지리	2학년 2학기	★★★ 등 15명	[별표] 참조
소계		15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15명에게 중복 기재 ※ 2학년 수강 학생 25명 중 총 15명(60%)	
교사 ○○○	확률과 통계	2학년 2학기	★★★ 등 15명	[별표] 참조
소계		15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15명에게 중복 기재 ※ 2학년 수강 학생 198명 중 총 15명(8%)	
교사 ○○○	확률과 통계	2학년 2학기	○○○ 등 14명	[별표] 참조
소계		14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14명에게 중복 기재 ※ 2학년 수강 학생 198명 중 총 14명(7%)	
교사 ○○○	음악 감상과 비평	3학년 1학기	○○○ 등 11명	[별표] 참조
소계		11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11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133명 중 총 11명(8%)	
총계		851명		

※ 자료: 정보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정보고등학교장은

앞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특성이 드러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학교법인 정보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의 요 구

제 목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성보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성보고등학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 활동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예산 확정 후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의 장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및 「사립학교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라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경비(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가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

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 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체재원의 과목 조정 및 증감, 목적사업비 반납에 따른 해당 목적사업 예산액 감액 등은 할 수 없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간 내(3월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에 예산 확정 처리 후 다음에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성보고등학교에서는 [표]와 같이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마지막 차수의 추가경정예산 113,918천원을 해당 학년도 2월에 편성하면서, 목적지정 예산이 아닌 자체재원 16,259천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거치지 아니한 채 K-에듀파인 시스템상 예산 확정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다.

[표] 2023~2025학년도 2차(마지막 회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내역

(단위: 건, 천원)

학년도	2차 추경 확정일	추경 내역				학운위 심의 여부	이사회 의결 여부
		총 금액	(교육청 등) 목적지정 경비 교부		그 외 경비 금액조정 등 금액		
			건수	금액			
2023	2024.02.29.	12,326	3	60,967	-48,641	X (2024.03.25. 사후 심의)	X
2024	2025.02.27.	99,585	3	36,356	63,229	X	X
2025	2026.02.27.	2,007	1	336	1,671	X	X
합 계		113,918	7	97,659	16,259		

※ 자료: 성보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성보고등학교장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기 바라며, 목적지정경비 간주처리 시 자체재원의 과목 조정 및 증감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학교회계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정보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4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세출예산편성 및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성보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성보고등학교에서는 교비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2.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집행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예산과목의 구분)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매년 발행)에 따라 사업 내용에 맞게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정당한 원가통계비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출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을 선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성보고등학교에서는 2023. 3월부터 2026. 5월 감사일 현재까지 2023~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표 1-1], [표 1-2] 과 같이 업무추진비 성격의 간식 구입을 교육운영비로 집행하거나 비품구입비 성격의 비품 구입을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 해당 지출 내역의 성격에 맞지 않는 원가통계비목으로 총57건, 금613,407,61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²⁾

[표 1-1] 교비회계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집행 내역(유형별)

(단위: 건, 천원)

유형	지출 건명	지출 성격	원가통계비목		건수	금액	비고
			정당과목	착오과목			
①	교원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준비물(김밥) 외 18건	간식(식대)	업무추진비	교육운영비	19	4,745	
②	2학년 교육여행 답사를 위한 항공권 외 3건	숙박,식대, 교통비	여비	교육운영비	4	2,688	
③	2학년 교육여행 답사비 (차량렌트비,주유비,주차비) 외 2건	차량렌트비, 주차비 등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3	735	
④	도서관 환경개선비 지급(가구.수 의) 외 27건	비품	비품구입비	시설비	28	593,938	
⑤	2024학년도 1학년 심화/확장 프로그램 참여교사 수당비 지급	강사비	운영수당	교육운영비	1	1,200	
⑥	1학년 특수학급 전기공사비 지급 외 1건	소규모수선, 소모품	일반수용비	시설비	2	10,101	
총합계					57	613,407	

※ 자료: 성보고등학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2017. 3. 21.(화) ~ 3. 24.(금) 동안 실시했던 ‘학교법인 성보학원 및 성보고등학교 종합감사’ 시,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비회계 세출예산 과목(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으로 총 111건, 금16,544,400원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학교운영비(교육운영비 및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음

[표 1-2] 교비회계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집행 내역(회계연도별)

(단위: 건, 천원)

회계 연도	유형별 건수 및 집행액						유형별 건수 및 집행액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8	1,574	0	0	0	0	6	64,676	0	0	0	0	14	66,250
2024	6	1,863	0	0	0	0	4	63,578	1	1,200	0	0	11	66,641
2025	5	1,309	4	2,688	3	735	15	412,328	0	0	2	10,101	29	427,161
2026	0	0	0	0	0	0	3	53,355	0	0	0	0	3	53,355
합계	19	4,746	4	2,688	3	735	28	593,937	1	1,200	2	10,101	57	613,407

※ 자료: 성보고등학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사전답사 경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³)에 따라 지급하며,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의 예산과목은 여비로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할 경우, 답사에 참여한 교사 등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성보고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사전답사를 다녀온 교사에게 여비를 지급하면서 [표 2]와 같이 출장자의 식비를 여비가 아닌 교육운영비로

3) 일비(1일당): 25,000원, 숙박비(1박당): 100,000원(서울시), 80,000원(광역시), 70,000원(그 밖의 지역), 식비(1일당): 25,000원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식비 지급 기준(1일 25,000원)을 초과하여 금186,9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2025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사전답사 식비 부적정 사용 내역

(단위: 명, 원)

건명	답사일	답사자	식비 지출과목		식비 지출금액		과다집행액 (B-A)
			정당	과오	정당 (A)	과오 (B)	
2학년 소규모테마교육여행 사전답사	7.4.	교사 ○○○ 등 5명	여비	교육운영비	125,000 (25,000원*5명)	189,900	64,900
	7.5.		여비	교육운영비	125,000 (25,000원*5명)	247,000	122,000
합계					250,000	436,900	186,900

※ 자료: 성보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성보고등학교장은

앞으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예산과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하기 바라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의 사전답사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여비를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일련 번호
5

서울특별시교육청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행정 절차 이행 부적정
기 관 명	성보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성보고등학교에서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창고 및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및 제9조(축조 등의 신고)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감독청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따라 가설건축물⁴⁾을

4)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건축하려는 자는 감독청(관할 교육지원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또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성보고등학교에서는 [표]와 같이 교내에 위치해 있는 매점 등 3곳의 건축물에 대하여 감독청의 건축 승인이나 신고 절차 없이 무허가로 사용 중인 사실이 있다.

[표] 무허가 가설건축물 현황

(성보고등학교, 2026. 5. 8. 기준)

연번	용도	면적(㎡)	구조	설치 일자	비고
1	매점	27	조립식판넬 (샌드위치판넬)	확인불가	
2	창고 (운동 용품 보관)	9	조립식판넬 (샌드위치판넬)	확인불가	
3	창고 (운동 용품 보관)	9	컨테이너	확인불가	

※ 자료: 성보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현장 점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성보고등학교장은

- ① 앞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 ② 조립식판넬 구조의 가설건축물 2동은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샌드위치판넬)로, 교육부에서 샌드위치판넬 해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교육시설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철거하기 바라며,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은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거나 철거하는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